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2145
------	------

제출일자 : 2021. 10. 7.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9. 2. ~ 2021. 9. 23.): 의견없음
- 2) 비용추계서: 별첨
- 3)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5)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1. 제안이유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다. 특별회계 일시차입, 잉여금의 처리,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 6조 ~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9조
 - 2) 「건축법」 제87조의3
 -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
- 나. 예산조치: 특별회계 조성 예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5
3. 보조금 및 교부금 등
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인건비, 점검비, 운영비, 사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전액구비
 - 세입 : 이행강제금은 4년('17~'20) 수납액 평균치로 적용
 - 세출 : 인건비 3인, 점검·운영·사업비 '21년도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조적조 2차점검 및 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등을 위해 사업비 50,000천원 추가적용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 이행강제금*35% (4년간 평균 10억원)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소계(a)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세출	○ 인건비	188,115	188,115	188,115	188,115	188,115	940,575
	○ 점검비	91,871	91,871	91,871	91,871	91,871	459,355
	○ 운영비	8,020	8,020	8,020	8,020	8,020	40,100
	○ 사업비	5,346	5,346	5,346	5,346	5,346	26,730
	소계(b)	343,352	343,352	343,352	343,352	343,352	1,716,760
□ 총 비용(a-b)		6,648	6,648	6,648	6,648	6,648	33,240

구 센터 (1개소 당 개략적 비용)	
인건비	약 188,115천원(시간선택전문 임기제 나급 3인)
점검비	약 91,871천원(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및 조사비)
운영비	약 8,020천원(차량유지비, 안전관리상, 안전 아카데미 등)
사업비	약 55,346천원(계측기 설치, 조적조 2차점검)
약 343,352천 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구비	세외수입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합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연정흠 (2627-231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약350,000천원 (이행강제금 x 35%)

	건축과	주택과	합계	세입
2017	49,175,050	922,776,210	971,951,260	340,182,941
2018	30,361,470	878,400,420	908,761,890	318,066,662
2019	102,798,750	1,005,427,160	1,108,225,910	387,879,069
2020	99,947,850	915,196,100	1,015,143,950	355,300,383
세입(이행강제금*0.35) 평균				350,357,264

2. 세출 : 약343,000천원

□ 비용추계 기준 : 인건비, 점검비, 사업비

가. 인건비(3인) : 188,115천원

○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인건비 : 62,705천원 x 3인

- 연 봉 : 44,710천원

- 수 당 : 12,745천원

- 급량비 및 출장비 : 5,280천원

나. 점검비 : 91,871천원

○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 56,591천원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점검, 조적조 건축물 점검

○ 건축지도원 중소형 공사장 점검 : 35,280천원

다. 운영비 : 8,020천원

○ 아카데미 책자제작·강사료, 안전관리상, 차량유지비

라. 사업비 : 55,346천원

- 재난취약시설 자동계측기 지속관리 : 5,346천원

- 조적조 2차점검 및 취약시설 보수보강 등 : 50,000천원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부칙 <제17390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7.>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7. 4. 1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46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3., 2020. 10. 5.>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용자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 ③ 삭제 <2020. 10. 5.>
-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 [본조신설 2018. 7. 19.]